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3
2. 의무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	12
3. 의무공개매수 위반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인수·합병의 방식은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share acquisition)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주식인수형 거래의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이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

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 개정안은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행매수를 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해당 주식등의 총수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두도록 하는 한편(안 제133조제4항 신설),
-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5조제19호).

현행	개정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u>

현 행	개 정 안
	<u>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행매수 이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 ----- ----- ----- ----- ----- ----- -----.
⑤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45조(벌칙)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 18의4. (생략)	1. ~ 18의4. (현행과 같음)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19. 제133조제3항·제4항 ----- ----- -----
20. ~ 48. (생략)	20. ~ 48. (현행과 같음)

□ M&A(Mergers & Acquisitions)는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하여 외부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으로 불리고 있는데, M&A의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합병¹⁾, 영업양수도²⁾, 주식양수도³⁾ 등이 거론됨.⁴⁾

○ 우리나라의 M&A는 주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 주식양수도 방식은 전체 기업결합의 84.8%로, 영업양수도(13.1%)나 합병(2.1%)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⁵⁾

□ 그런데,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의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회사의 소수

1)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
 2)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조직 및 인원, 권리와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
 3)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4)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p. 348.
 5)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의 권리가 다음과 같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 첫째,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의 M&A는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주주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주식양수도방식은 이와 같은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일반주주, 특히 해당 M&A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의 자금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음.
- 둘째, 통상 주식 양수도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은 피인수기업에게 경영권 프리미엄⁶⁾을 지불하고 있는데, 회사의 자산인 경영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⁷⁾

□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공개매수”란 인수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인수인으로 하여금 피인수회사 일반주주들에게도 특정 가격으로 인수제안을 하도록 하는 제도임.⁸⁾

6)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쌓아온 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한 할증액으로,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출처: 박진,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7) 홍지연, “국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및 글로벌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2-25호, 2022.12.19.

- 이 제도는 197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미국을 제외한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함.
- EU와 영국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잔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해당 주식 총수의 1/3을 초과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하려는 주식에 대해서만, 2/3를 초과 취득하려는 경우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하고 있어 EU와 영국에 비하여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 중임.
- 한편, 미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적 적극적인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⁹⁾
- 우리나라는 1997년 「舊증권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¹⁰⁾ 기업의 구조조정 위축 우려

8) 정준혁,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기능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증권법연구』 20(2), p. 82.

9)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2022.12.21.

10) 「舊증권거래법」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②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 자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주식등을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② 공개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하며, 제21조제2항의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및 IMF의 폐지 요구 등으로 1998년 2월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음.

[표1]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해외사례

구분	매수 요건	매수 대상	매수 가격
미국	제도 미도입		
EU	○ 일정 규모 이상* 취득 * 회원국 결정사항 (독·프)30%, (이)25%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영국	○ 30% 이상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일본	○ 1/3을 초과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2/3를 초과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舊증권거래법	○ 25% 이상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 최소 50%+1주 매수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개정안	○ 25% 이상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현행법령은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¹¹⁾하고 있으나, 통상 M&A 거래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舊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 (의무공개매수의 주식수)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수를 말한다.

제13조의3(의무공개매수시의 매수가격)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공개매수자가 당해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최고거래가격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중 높은 가격
2. 공개매수자가 제1호의 기간동안 당해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

공개매수의 법정요건¹²⁾ 불충족으로 인하여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¹³⁾

□ 개정안은 선행매수를 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해당 주식등의 총수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를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주주가 M&A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매각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지배주주에게만 귀속 되어왔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은 주식등의 추가 매수, 일반주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등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부담을 가중 시킴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주주의 권익과 M&A 시장에 미치는

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2)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5% 이상의 지분 취득

13) 홍지연, “국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및 글로벌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2-25호, 2022.12.19.

14) 그 밖에도, 일반주주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치감소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일반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 M&A 시장 위축 가능성, 해외 입법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무공개매수 요건과 의무공개매수의 범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의무공개매수 요건(25%)은 「舊증권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국·독일·프랑스(30%) 등에 비하여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반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더 많은 인수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을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영국·EU와 동일하게 모든 일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이나, 「舊증권거래법」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더 많은 물량을 의무공개매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수자금 부담에 따른 M&A 시장 위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주 보호 효과와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제도 도입 시 의무공개매수자 요건·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도입 형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를 하려는 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매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경우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과 기업 M&A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무공개매수의 대상을 해당 주식 총수의 과반(50%+1주)으로 하는 내용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① 개정안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요건(25% 이상 매수)은 해외 입법례의 보편적 기준(30~33%)에 비해, 의무공개매수 대상(잔여주식 전체)은 「舊증권거래법」과 2022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50%+1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 ② 인수비용 증가에 따라 해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국내기업에게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코스닥협회**는 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M&A 거래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소액주주 일부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¹⁵⁾ 등을 이유로 신중한

15) ① 공개매수 가격과 기업가치에 기초한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소액주주가 불리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도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고, ② 기업인수 후 더욱 독점적인 지배주주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① 과도한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M&A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② M&A에 따른 구조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의 영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장기 실적의 개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과 책임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단기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와 다른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가격을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일정 가격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② (생략) <u><신설></u>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u>

될 가능성도 있으며, ③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M&A가 위축될 경우 종국적으로 소액주주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의 가격을 “선행매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취지가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유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舊증권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부터 과거 1년간 공개매수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최고가격과 공고매수신고서 제출일 전일 종가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의무 공개매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¹⁶⁾

□ 다만,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41조제1항 단서¹⁷⁾에서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등의

16) 「舊증권거래법」

제25조의2(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② 공개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하며, 제21조제2항의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舊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3(의무공개매수시의 매수가격)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공개매수자가 당해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최고거래가격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중 높은 가격
2. 공개매수자가 제1호의 기간동안 당해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 요건이 충족되어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응모한 주식등의 수가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보다 적을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무공개매수를 통한 일반주주 보호 법익이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응모한 주식등의 수가 의무공개매수 대상 주식보다 적은 경우에는 응모한 주식 수만큼을 매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의무공개매수 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분 명령권

□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를 위반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5조).

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2.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현행	개정안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제3항·제4항 ----- ----- ----- ----- ----- ----- ----- ----- -----.

□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를 위반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금융위원회의 처분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분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그 주식”이 선행매수한 주식인지 또는 선행매수 이후 공개매수를 통한 추가매수 주식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행매수한 주식등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